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(공시송달) 공고 제2024-70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7. 18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1. 건　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사전 통지
2. 근　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, 제20조5항, 제29조제1항제8호,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김0민	1999.06.17.	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사전 통지	출석통지 2회 미출석 및 연락 두절	취업지원서비스 종료 (중단) 및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60, 504호

4. 공고기간 : 2024. 7. 18. ~ 2024. 8. 1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한정자(031-646-127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